

협착사고

세탁물 건조기 롤에 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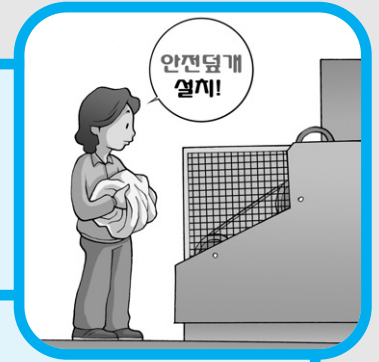


1. 재해발생경위

경기도 소재 ○○작업장에서 세탁물 건조기에 세탁물을 올려 놓던 중 작업자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가 회전하는 롤과 평벨트 사이에 끼이면서 질식사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근로자 작업복 불량
- 나.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다. 안전덮개 미설치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복의 단정한 착용

세탁실 내에는 세탁기, 탈수기, 세탁물 건조기 등 회전체로 인한 협착위험이 있는 설비가 대부분이므로 세탁실 작업자는 목도리, 스카프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옷소매 등을 단정하게 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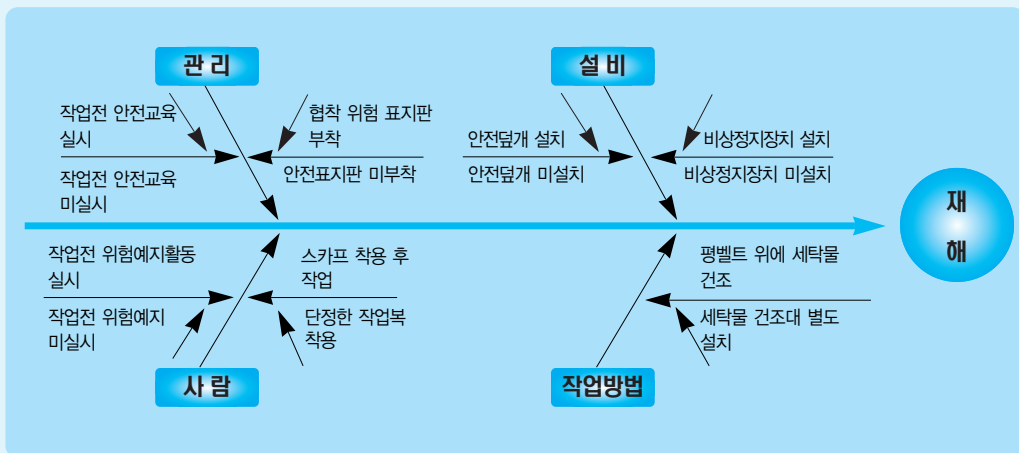
근로자의 작업복 또는 신체의 일부가 회전 물과 평벨트 사이에 협착되는 경우, 협착된 근로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로프 등을 설치하여 세탁물 건조기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함.

다. 안전덮개 설치

회전 물과 평벨트 사이에 협착 위험이 있는 부분은 작업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세탁물을 평벨트 위에 올려놓지 말고 세탁물 건조대를 설치하여 정해진 위치에 놓도록 함.

4. 법 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착사고

숫크리트 전송라인 스크류부 청소작업 중 발목 협착



1. 재해발생경위

서울 ○○철도공사 현장에서 배척플랜트의 숫크리트 수평 전송라인인 스크류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스크류에 오른쪽 발이 협착·절단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스크류 등 기계기구 가동 상태에서 청소작업
- 나. 방호덮개 미설치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기계기구 정지 후 청소작업 실시

스크류 등 기계장치 부위를 청소하거나 정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을 정지시키고 스위치 등에 시건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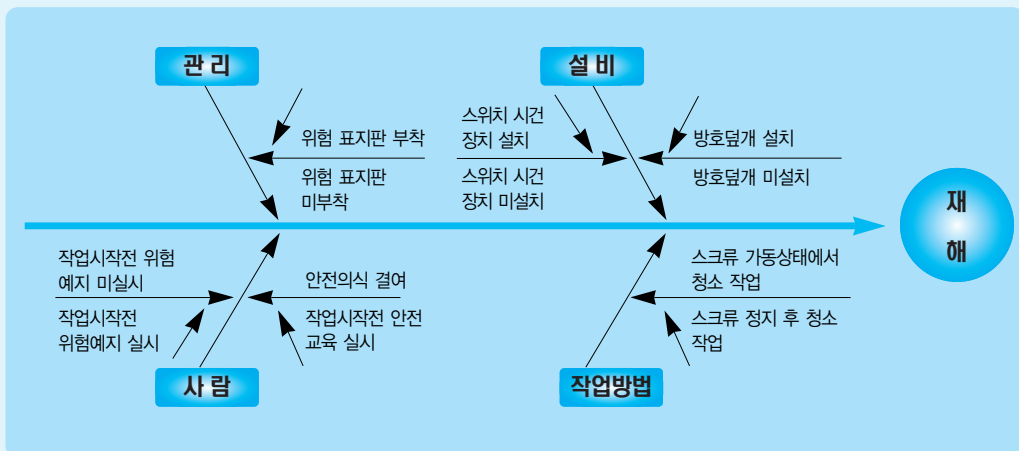
작업여건상 기계기구를 가동해야할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와의 접촉을 예방하고, 덮개를 개방할 경우 기계가 멈추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청소 및 정비작업 시작 전에 작업 상태에 대한 위험요소를 미리 숙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붕괴사고

굴착작업 중 토사붕괴로 인한 재해



1. 재해발생경위

서울 ○○ 증축공사 현장에서 굴착 및 부지 정리작업 도중 피해자가 굴착사면 아래 지면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굴삭기 운전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순간, 수직으로 굴착한 법면 상부가 붕괴되면서 무너지는 토사에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안전한 굴착 기울기 미확보
- 나. 피해자 작업지시 위치 부적절
- 다.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한 굴착 기울기 확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 종류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의 기울기(풍화암 1 : 0.8)를 확보하여 지반 붕괴를 예방하여야 함.

나.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붕괴 위험이 있는 지반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나 부득이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지반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다. 위험한 지역에 출입 금지

안전한 굴착면이 확보되지 않은 굴착사면 아래에는 토사 붕괴 시 중대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4. 법 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